

〈연구노트〉

〈柳淵傳〉에 나타난 相續과 그 葛藤*

鄭肯植**

목 차

- I. 머리말
- II. 登場人物의 行態와 意識
 - 1. 유유와 유연 형제
 - 2. 이지와 심릉
 - 3. 형수 백씨
- III.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우리의 제사는 儒教에 기본을 둔 祖上祭祀의 형식과 家父長制的 祭祀承繼를 취하고 있다. 조상제사는 男系親族集團에 의해 영위되며, 계승에서도 男系系譜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의 祭祀에는 他系와 女系를 배제하려는 男系主義, 가장인 宗孫을 중심으로 直系·傍系の 후손들이 宗家를 지원하여 제사를 지내는 宗家主義, 모든 의식절차를 남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男性主義가 작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 연구사업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용하고 있다.¹⁾ 필자는 이러한 제사승계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찰하였다.²⁾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너리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는 當代人들의 祭祀承繼에 대한 관념이었다. 필자가 그 동안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사료는 朝鮮王朝實錄인데, 이는 2차 사료로 인간 내면의 의식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료상의 제한 등으로 역사의 주체인 당시인들의 심리세계를 차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³⁾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와 내면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 류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⁴⁾ 그래서 필자는 1564년(명종 19)에 발생한 柳淵 獄死를 바탕으로 하여 白沙 李恒福(1556~1618)이 1604년(선조 40)에 저술한 <柳淵傳>을

1) 竹田 旦/康龍權 역, 『韓國에 있어서의 祖上崇拜의 分割에 대하여』, 『석당논총』 10(동아대 석당전문화연구소, 1985), 193 - 5면.

2) 조선전기 제사승계법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朝鮮初期 祭祀承繼法제의 成立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6. 2); 『朝鮮前期 四代奉祀의 形成過程에 대한 一考察』, 『법제연구』 11(한국법제연구원, 1996); 『16세기 奉祀財産의 實態』, 『고문서연구』 9·10(한국고문서학회, 1996);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한국사회사학회, 1998); 『默齋日記에 나타난 家祭祀의 實態』, 『법제연구』 16(한국법제연구원, 1999).

3) 역사에서 인간의 심리 내지 심성에 대한 언급은 朴秉濠, 『韓國法史學의 反省과 展望』, 『한국법학 50년 : 과거 · 현재 · 미래 I』(법학교수회 편, 1998), 520~1면; 김응중, 『심성사의 여러 모습』, 안병직 외 지음, 『오늘의 역사학』(한겨레신문사, 1998), 79~131면; 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창작과비평사, 1983) 등 참조.

근래에 서양사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역사학 방법에 대한 소개와 정확한 이해 등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쟁으로 안병직 등의 위 책에 대한 논쟁적 서평으로 陸榮洙, 「내일의 서양사를 위한 提言 : <오늘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들 수 있다(『역사학보』 158[역사학회, 1998] 수록).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를 한국사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성과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법학분야에서는 철저한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法意識, 法感情 등에 대한 연구를 이러한 분야의 초기성과로 꼽을 수 있다(朴秉濠, 『傳統的 法 · 法意識과 現代法の 課題』, 『歷史的 脈絡에서 본 現代 韓國文化의 方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참조]).

4)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分財記의 序文에 죽음을 앞둔 인간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遺贈者, 주로 父母의 일방적 심정만 표현될 뿐 그 상대방인 受贈者, 대개는 자녀들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片面的이라는 한계가 있다.

5) <柳淵傳>의 발굴과 이와 관련되는 내용 등은 전적으로 李憲洪, 『朝鮮朝訟事小說研究』(삼지원, 1997), 80-95면을 참조하였다. 본고에서는 李恒福의 문집인 <白沙集> 卷16 <柳淵傳

분석하여 16세기인들의 제사승계에 대한 관념의 일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柳淵 獄死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64년(명종 19) 司諫院에 다음의 綱常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었다. “대구에 사는 柳游가 가출하였는데, 그의 妹夫人 宗室 達城 命 李禔(이지)가 柳游를 찾아 學生인 아우 柳淵에게 돌려보내었다. 그러나 柳淵은 만이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차지하기[奪嫡爭財] 위해 형을 죽였다. 그런데 大邱府使 朴應川도 綱常罪人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간원에서는 즉시 유연을 압송하여 그와 관련자들을 심문하고 유연의 자백을 받아 사형에 처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이었다. 그러나 유연 사후에 유유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580년(선조 13)에는 經筵에서 修撰 尹先覺이 柳游가 天裕勇으로 행세하여 살아 있음을 아뢰었고, 천유용을 잡아와 심문하니 柳游라고 실토하였다. 매부인 이지와 從妹夫 심륜은 유연 형제의 부 柳禮源이 죽자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蔡應珪를 柳游로 변장시켜 柳淵을 모함하여 죽게 한 진상이 드러났다.6) 유연 사후 16년만에 그를 무고한 이지 등은 처단되었고 그는 死後에 伸冤되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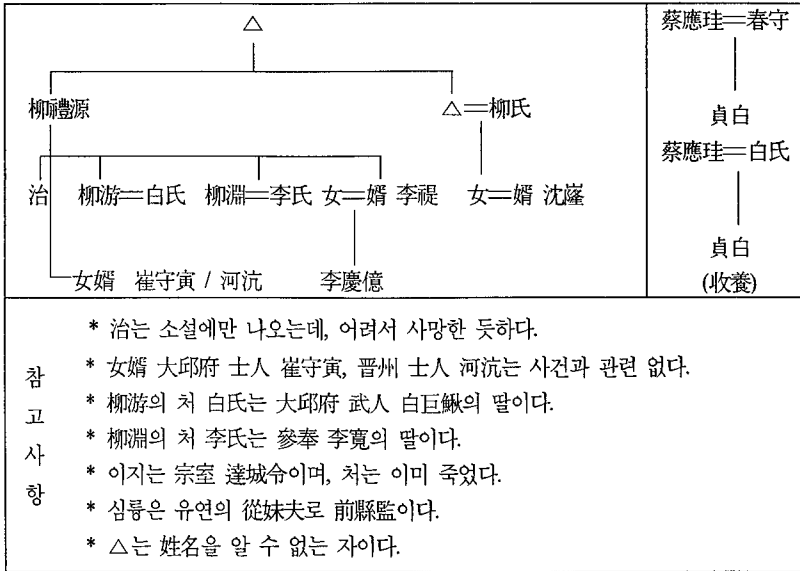
유연 옥사에 대해서는 실록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나8) <柳淵傳>에는 실록에는 언급이 없는 이지가 유연을 모함한 원인과 심륜이 가담한 이유 등 구체적인 관계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어 宗法制의 수용에 따른 相續慣行의 변화와 당시 대인들의 제사에 대한 관념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柳淵傳>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등장인물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들의 내면의 심리세계, 즉 제사에 대한 의식을 사회적 추

拾遺>(한국역대문집총서 23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94), 340~360면에 수록된 것을 대본으로 하였다. 앞으로 <<柳淵傳>>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 6) “淵曰 … 尋思禍本 職[都; 필자 訂正]由橫財 汝以先父別給 及伯叔母柳氏 文券告官而毀之”(351면).
- 7) 柳淵獄死의 내용과 전개과정 및 형사법적 분석에 대해서는 줄고, 「<柳淵傳>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16世紀 刑事階次的 일례」,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이수성선생 환갑 기념논문집)』(동성사, 2000) 참조.
- 8)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명종 19년 3월 임술조와 선조 4년 10월 병진조와 동 13년 윤4월 무신조에 세 차례 등장하며, 명종 19년에는 유연옥사의 발생과 처리 그리고 선조 14년조에는 그 伸冤 과정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리력을 동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등장인물의 순서대로 행태와 의식을 분석하기로 하며, <柳淵傳>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⁹⁾

등장 인물 관계도



9) 유예원 일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유예원 부자들은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司馬榜目에도 등장하지 않아서, 그의 본관 등 기초적인 내용도 알 수 없다. 다만 河沆은 司馬榜目에 河洛(1530년생, 1568년[선조 1], 增廣進士試 入格者)의 아우로 나타나며, 본관은 晋州이고 거주지는 尙州이다. 그러나 본인에 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하향을 통하여 유연 등의 가계를 살필 수 없다. 본고의 내용이 유연과 이지 등 소설에서 파악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인물의 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은 본고의 논지전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연은 당시 星州에 유배 중이던 默齋 李文樾(1495~1567)에게 책을 빌리고 家事를 상의하는 등 교류한 사실은 1556년(명종 11) 4월, 5월, 8월 등 그의 일기인 <默齋日記>의 여러 곳에서 보인다.

II. 登場人物의 行態와 意識

이 소설의 주인공은 柳淵이며 주변인물은 형인 柳游, 형수인 白氏, 여동생의 夫(妹弟) 이지, 사촌 매제 심룡, 가짜 유유인 蔡應珪, 그의 처인 春守와 아들 貞白이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에서 당시의 상속관행을 위주로 가족의 모습을 그리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의 심리상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1. 柳游와 柳淵 형제

실록에는 유예원의 아들로 游와 淵만이 나타나지만, <유연전>에는 또 治가 등장하고 있으며, 가장 앞에 있다.¹⁰⁾ 당시나 현재의 관례상 형제는 출생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치가 첫째이다. 그런데 <유연전>에는 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죽은 것이 분명하고, 유유가 亡亡弟及으로 제사를 승계하고 나아가 가계를 계승할 자이다.¹¹⁾

유유는 1556년(명종 11년)에 가출하였다.¹²⁾ 이 가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왜 유유는 가출하였을까? 유유는 미쳐서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¹³⁾ 실제로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 부 유예원이 책망을 하였기 때문에 家出하였다.¹⁴⁾ 부의 책망에 대해 유유는 가출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즉 첩을 통하여¹⁵⁾ 친자를 얻거나 아니면 立後하여 가계를 계승할 자를 얻을

10) “柳淵字震甫 大丘人也 父縣監禮原 有三子 治游淵”(340면).

11) 《經國大典》 <禮典> [奉祀]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 奉祀”.

12) 유유의 가출은 李文樞의 《默齋日記》에서도 확인된다. 《默齋日記》 1556년(명종 11) 4월 19일 “○… 夕 李士碩來言 柳淵聞其兄在白可化家妻房 曾有心証 中夜潛出 莫知其去之奇 乃借天澤牝馬 馳往尋兄云云. 淵亦心虛者云云. … ○柳淵還來 聞其兄游得復來家云云”; 『默齋日記』(국사편찬위원회, 1998), 하권 117면.

13) “游入山讀書 因忽不返 禮原與白氏 言狂易而奔”(341면).

14) “推官問 游緣何出家 淵言人言發狂實非狂也 有些家變 不得已去之”(438면); “因問出家之由 則云 娶妻三歲 猶無子 父謂業薄 責令母得近膝下 因轉入西方後絕”(354면).

15) 첩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축첩을 못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는 유연이 소송 때문에 이문건을 찾아간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앞의 방법은 유유는 생래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유유는 유연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性機能障碍者였다.¹⁶⁾ 그렇다면 유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입후뿐이었다. 嫡妾 모두 무후이면 입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유는 당연히 입후를 할 수 있었다.¹⁷⁾ 그렇지만 유유는 입후를 하지 않고 부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였다.

유예원의 태도에서 우리는 강력한 血緣意識과 長子中心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는 非血孫인 繼後子가 아니라 친손이 가계를 이어 조상들을 봉사하고 또 자기도 친손으로부터 사후에 봉양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유의 친자를 기대하여 채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형이 아닌 유연의 자식으로도 가계계승과 사후봉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장자를 중시하여 유유의 아들을 기대하여 결국은 유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던 것이다.

柳淵은 부인 유예원 사후에는 형을 대신하여 장례를 치르고 守墳하였다.¹⁸⁾ 이때 유유는 행방이 묘연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유예원의 장례는 장자인 유유가 치러야 한다. 그런데도 유연이 代行하였다. 通過儀禮의 하나인 喪事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유유에게 자식도 없기 때문에 손자가 承重하여 거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연은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형을 대행하였다. 이를 攝行이라고 하는데, 조선전기에도 이러한 것은 자주 나타난다.¹⁹⁾

유연은 재산 때문에 형을 죽였다는 이유, 즉 爭嫡 내지 奪嫡로 엄하게 처벌받았다. 이 爭嫡 내지 奪嫡은 강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엄히 다루어졌다. 史官도 유연을 兇惡無道한 자로 혹평하고 있다.²⁰⁾ 조선 전기에 奪嫡은 竝妻所生 간에 발생

수 있다. <默齋日記> 1561년 윤5월 12일 “○柳淵來見言 父家田 爲人所訟云云 使欲導達于牧前矣”; 윤5 16일 “○李士頌來見 言柳淵家事 乃去”; 『默齋日記』, 하권 432면, 434면.

16) 유연이 심문에서 채유규가 유유가 아닌 이유를 밝히면서 유유의 특징으로 세 가지 점을 들었다. 그 중 “잔털만 있고 구레나룻은 없으며, 형의 목소리가 부인과 같다(有麻子無髯… 臣兒音如婦人; 347면)”는 성기능장애자의 특징이다.

17) <經國大典> <禮典> [立後]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18) “禮源死 淵持喪守廬”(341면); <默齋日記> 1562년(명종 17) 1월 9일 “○柳淵來見 持誌石草及土片 求其父墓誌”; 2월 1일 “○柳淵取誌石去”; 『默齋日記』, 하권 499면, 505면.

19) 앞의 학위논문, 158~169면 참조.

한 것이 대부분이며, 친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드물었다. 특히 1413년(태종 13)에 重婚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성종 이후에는 중혼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一夫一妻制와 함께 첩제도가 확립된 15세기 말 이후에는 병처 현상이 소멸되어, 친자 사이의 탈적 내지 쟁적은 거의 사라졌다.²¹⁾ 단지 첩자를 적자로 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첩자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²²⁾ 이러한 명분적 사회질서가 무르익어 가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친아우가 맏자리를 노려 친형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유연은 본인의 호소와 몇 가지의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綱常犯으로 한을 머금은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연의 처형에서 兄弟의 次序를 유지하여 명분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2. 이지와 심룡

이지는 처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연을 모함하였다. 이지는 유예원이 그에게 良田을 別給을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전을 還收당할까 우려하였고 또 유연이 처가의 재산을 독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²³⁾ 또 처부 유예원이 유연을 총애하는 것을 시기하였다.²⁴⁾ 이것이 모함한 직접적인 이유이다. 일

- 20) 《明宗實錄》 권19 명종 19년 3월 임술 “史臣曰 柳淵 以兇惡不道之人 生奪長專財之計 …”;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조선왕조실록』 20권 693면a; 이문건도 이전에는 유연과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대구와 멀리 떨어져 지 않은 성주에 거주하고 있는 그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다. 평소 유연의 심성 등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유연이 그런 범죄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상범인 유연을 옹호하는 것은 귀양중인 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무모한 짓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것이다. 만약 목재 생전에 유연의 누명이 雪冤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을 것이다.
- 21) 조선전기 一夫一妻制와 妻妾制의 확립과정에 대해서는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일지사, 1997), 54~79면; 拙稿, 앞의 박사학위논문, 143~153면; 裴在弘, 「朝鮮前期 妻妾分擘과 庶孽」, 『대구사학』 41(대구사학회, 1991), 17면.
- 22) 野村調太郎, 「朝鮮に於ける廢嫡に關する慣習の變遷 1, 2」, 『司法協會雜誌』 15권 1, 2호(朝鮮司法協會, 1936. 1, 2) 참조.
- 23) “談間或言 河邊麥田 淵政獨占耶 又曰 吾妻家産 淵獨專擅 可乎”(355면).
- 24) “蓋視以臣父別給良田 忌臣怙寵”(348면).

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유연을 제거하였다.

만약 진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지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였다면 유예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유유와 유연 모두에게 아들은 없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은 당연히 이지의 처를 비롯한 딸들이 궁극에는 유예원의 外孫들, 즉 이지의 아들 李慶億 등이 상속하게 된다.

문제는 유유의 처와 유연의 처이다. 그녀들도 조금이나마 상속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우선 그녀들은 유예원의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다. 만약 가능하다면 유예원 생전에 며느리에게 별급한 정도의 재산일 것이다. 그러나 <유연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음 그녀들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 奉祀條로 상속할 수 있다. 이때 유연이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처 이씨는 전혀 상속을 할 수 없고 다만 유연의 재산만 봉사조로 일부 물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유유의 처 백씨는 장자의 처, 즉 맏며느리[冢婦]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유예원의 외손들이 상속하게 된다.

이지는 유유가 가출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처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연을 모함하고 일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딸들도 상속권이 있는 남녀균분상속의 의식과 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지의 심정을 살펴보자. 처부 유예원에게는 治, 游, 淵 3형제가 있었지만, 치는 죽고, 유는 가출하여 유연만 남아 있다. 만약 유연이 죽으면 처부 유예원을 奉祀하거나 제사를 승계할 자가 없게 된다. 즉 처가의 가계가 단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행하여 결국 유연을 죽게 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처가가계의 단절이라는 비극을 가져왔다.

가계계승과 사후봉양은 모든 인간이 염두에 두는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이지도 자기에게 양전을 별급한 처부의 사후봉양을 모른 채 할 만큼 이지가 잔인한 인간이었을까? 그래도 宗室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유예원의 제사를 완전히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그 방법은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冢婦奉祀나 外孫奉祀이었다. 유유의 처 백씨 생전에는 백씨가 하고 그 사후에는 자기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면 되는 것이다. 이지의 행동이나 의식에서 經國

大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宗法的 祭祀承繼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당시의 慣行的 祭祀承繼의 행태와 의식을 볼 수 있다.

유예원이 이지에게 별급을 한 것이 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참화의 씨앗을 뿌렸을까? 우리는 다시 그 이유를 캐지 않을 수 없다. 이지의 처, 즉 유예원의 딸은 이미 죽었다. 흔히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유예원은 죽을 딸을 불쌍히 여겨 지속적으로 봉양을 받기를 바랬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인 이지나 아들인 이경억이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므로 유예원을 가엾은 딸의 제사를 위해 사위에게 좋은 땅을 별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지 등이 딸의 제사를 소홀히 하여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다툼이 커지면 그 토지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유예원은 차마 땅너의 제사를 위해 준 땅을 직접 회수하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은 유연이 되찾아가게 될 것이다.²⁵⁾ 그래서 유연의 진술처럼 이지는 그 땅을 다시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유연을 시기하고 모함하였다.

이제 심룡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그는 유연, 이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처 4촌, 4촌 동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지가 유연을 모함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처모 유씨, 즉 유연의 숙모는 그의 처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무후이면 유예원의 자가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재산을 박탈당할까 우려하였다.²⁶⁾ 조선전기의 상속은 철저한 혈연상속으로 남편은 처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처의 재산은 피가 통하는 친정의 피붙이에게 가야 한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심룡은 숙모로부터 받은 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고, 그 재산은 유씨의 친정 조카인 유연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룡은 유연을 해치려는 이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심룡에게는 오직 숙모

25) 文叔子, 『朝鮮初期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訴訟事例』, 『고문서연구』 5(한국고문서학회, 1994) 참조.

26) “薩以臣伯叔母柳 嘗以家貨畀之 其妻曰 ‘汝若無子 可傳禮源之子’ 薩常懼奪貨 猜視於臣”(348년).

로부터 받은 처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처3촌인 유예원의 봉사는 안중에 없었다.

3. 형수 백씨

유연의 형수 백씨는 단지 이지의 음모를 목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였다.²⁷⁾ 왜 그랬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백씨의 행태와 의식에 대해 살펴보자. 蔡應珪가 眞游가 아님을 처음 알아본 이는 백씨의 新婢였다. 신비는 부녀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오는 몸종이다. 백씨의 친부는 대구부의 武人으로 신비가 있는 집에서, 무인 가문에서도 문인가문과 다르지 않게 혼인을 할 때에 딸에게 노비를 別給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좀더 추론하면 역시 무인가문도 문인가문과 마찬가지로 男女均分相續이었다.

백씨는 無子이고 게다가 남편마저 가출한 상태였다. 만약 이 상태대로라면 유예원 사후에는 형망제급에 따라 유연이 조상을 봉사하게 된다. 이는 가문 내에서의 백씨의 위상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앞서 유예원의 심정을 살펴본 것처럼 장자에 대한 기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가계의 단절을 초래하였다는 도덕적 관습적 비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입후를 하는 것이다. 법상으로는 兩家 父母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父 사후에는 母 단독으로 할 수 있다.²⁸⁾ 이 경우 유유의 사망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행방이 묘연하므로 權道로 가능하고, 국가 구체적으로는 예조에서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입후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백씨 자신이 제사를 승계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冢婦法(奉祀)의 관습이다.²⁹⁾ 16세기 초반 하더라도 부녀도 땀땀이 남편과 조상을 봉사할 수 있

27) 백씨는 첫날밤의 이야기를 미리 꾸며 蔡應珪가 유유임을 믿게 하였다(《明宗實錄》 권19 명종 19년 3월 임술;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조선왕조실록』 20권 693면b).

28) 《經國大典》 <禮典> [立後] “[割註] 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

29) 李舜九, 「朝鮮中期 冢婦法과 立後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한국고문서학회, 1996) 참조.

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부터는 이 관습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형망제급은 총부봉사와 모순된다. 이는 단순한 奉祀權의 문제를 넘어서 총부의 생존, 나아가 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상으로는 家廟가 있는 家舍는 祭祀主宰者가 승계한다.³⁰⁾ 봉사권이 次子에게로 이전되면(移宗)을 만며느리는 살던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³¹⁾ 유연은 이미 부의 장례를 거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승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백씨는 유연이 제사를 승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을 것이다. 마침 이지는 유연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백씨는 제사권의 확보와 그리고 안정적인 생계를 위하여 이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백씨가 봉사할 경우, 백씨 사후에 다시 봉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에는 유예원의 손자,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원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外孫奉祀나 아니면 계후자가 하는 立後奉祀가 가능하다. 외손봉사의 경우, 유예원의 女嬀인 崔守寅, 河沆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백씨는 봉사자의 외숙모로 어느 정도 제사를 비롯한 가사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기 수중에 넣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상정으로 백씨는 외손봉사를 꺼려할 것이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입후봉사뿐이다. 계후자의 선정은 부처가 함께 하지만, 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후자의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 즉 처가 단독으로, 아니면 시집의 친족들이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³²⁾ 전자의 경우에는 백씨는 입후에서 주도권을 지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를 계후자로 삼을 수 있고 또 가문에서 위상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는 백씨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백씨는 가문에서 총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계후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후봉사가 아닌 侍養子를 통한 異姓奉祀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연의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백씨는 기꺼이 유연을 제거하려는 이지의 음모에 가담하였다.

30) 《經國大典》 <戶典> [田宅] “立廟家舍 傳於主祭子孫”

31) 16세기 중엽 이후 家舍에 대한 제사승계자와 거주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受敎가 많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拙稿, 앞의 박사학위논문, 117~126면 참조.

32) 이순구, 앞의 글, 272면 참조.

백씨에게 남은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에 대한 분쟁이다. 시가의 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新婢를 포함하여 친정에서 받은 재산조차도 어찌 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겠지만, 자식이 없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만약 백씨의 사후에 시집의 조카, 좀더 구체적으로는 유연의 자식 가운데 누군가가 백씨를 봉사하고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백씨는 생전에 아무런 정이가 없는 조카로부터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러한 그도 정성스레 봉사할 리는 만무하고 다만 재산만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씨는 생전이나 사후에 편안함을 위해서는 제사와 재산에 대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유언을 죽이려는 이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백씨는 유씨 일족에 의한 孀父 유예원과 夫의 유유의 봉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생전에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거행하고, 사후에는 繼後子이든 侍養子이든 백씨가 직접 선정한 양자가 하면 舅夫의 제사도 끊이지 않고 생전에는 재산을 유지하고 사후에는 자기의 제사를 정성스레 거행할 자에게 제사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백씨는 이지의 음모가 탄로되지 않고 완전범죄로 하기 위해 蔡應珪와 春守 사이의 아들 貞白을 侍養子로 삼았다. 유유가 부 유예원의 무자에 대한 책망 탓으로 가출할 정도였으면, 백씨에 대한 압력도 강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씨는 입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당시 입후가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응규가 眞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貞白을 수양하였지만, 貞白의 친모 春守는 꺼렸으나 이지의 권유에 따라 마지못하여 수양시켰다.³³⁾ 그런데 춘수는 왜 이를 꺼렸을까? 이지의 음모대로라면 춘수는 유유의 첩이 되고, 정백은 첩자가 된다. 일단 신분은 높지는 않지만, 본인은 첩으로, 친자인 정백은 첩자로 강등되는 것을 싫어해서일 것이다. 또 만약 백씨가 정백을 侍養子로 삼으면 춘수는

33) “其年白氏 遭驕欲以貞白歸養 妾不許 後見視問之 視云 聞諸道路多言 淵獄可疑 或傳應珪 逃生尚在 事將不測 汝若不許貞白歸 祇益人疑 勸妾許送”(357면).

정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꺼려서일 것이다. 나중에 춘수가 정백을 친자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주 만나는 것은 정백이 유유의 친자가 아님을 자백하는 것으로 유연을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지의 음모를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춘수와 정백은 첩과 첩자라는 신분의 강등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정백이 첩자이기 때문에 유연의 가문에서 홀대를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 춘수는 친자인 백정이 백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만하다. 만에 하나 나중에 모든 것이 발각되면 춘수 모자의 생명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실제로 춘수는 사형을 당하였고, 백씨는 백정을 官廷에 고발하였다.³⁴⁾ 또 한편으로 춘수는 백정을 백씨의 시양자로 보냄으로써 친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춘수는 이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또 신분의 강등과 생명의 보전을 위해 백정을 백씨의 시양자로 보내는 것에도 반대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생명을 잃었다.

백씨는 貞白을 시양자로 삼은 후 10년 간 같이 살았다. 대개 시양자는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을 친자식으로 삼아 양육하고 노후에 봉양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부모와 시양자 사이에는 情誼的 관계가 필요하다. 백씨와 정백은 10년간 함께 살았지만, 특별한 정은 싹트지 않아서 백씨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백을 고발하였다. 만약 유유가 살아 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貞白은 외부적으로는 친자로 백씨에게는 侍養자로 인식되어 유예원과 유유의 제사를 받들며 살았을 것이다.

유연이 무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에는 유유의 처 백씨의 역할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백씨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았고, 단지 유유가 옥에 있는 동안 고향에 있는 것에 대해 비난하였을 뿐이다.³⁵⁾ 유유도 백씨에 대해 비난만 하였을 뿐 사실상 헤어져서 모든 것을 끝내었다.³⁶⁾ 백씨도 유유가 죽을 때에도 근심 없이 그냥 있었고, 용강에 귀양가 있는 동안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냈고,³⁷⁾ 별다른

34) “春守絞死”(357면); “春守之子貞白 … 及游獄起 白氏結以告官云 今聞眞柳游出 蔡應珪自裁 請鞠貞白 朝廷置不問”(358면).

35) “游方在獄 朝議有言 白氏不宜在鄉 越視其獄 白氏聞而入京”(357면).

36) “及游出獄 直往白氏寓 立而咳曰 ‘汝前以蔡奴爲我 而賊吾弟 異日勿謂今日 我爲非游’ 言訖拂衣去不顧”(357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명을 다하고 죽은 것 같다. 백씨의 행위는 소극적이지만 유연 가문을 화란에 휩싸이게 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는 크게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이다. 그런데 유유의 처 백씨에 대해서는 작자는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대의 평자들도 재판의 문제, 즉 신중하지 못한 절차와 滅門에 이르게 한 이지의 행동만 비난을 하고 있을 뿐, 소극적으로 관여하여 남편의 가문, 시집에 양화를 불러들인 백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조선후기의 관점이나 사고틀로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이로써 16세기 중엽 남성중심의 사회가 강력하게 확립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Ⅲ. 맺음말

등장인물의 행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상속관행과 그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문제의식과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된 소고를 맺고자 한다.

유예원 가문 전체의 제사는 장자 治가 사망함에 따라 游가 승계하고, 유가 가출하자 막내인 淵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경국대전에 규정된 형망제급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예원은 柳游에게 친자가 없자 친손을 기대하여 유유를 책망하여 가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입후나 축첩을 통한 가계계승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은 듯하다. 이 점에서 혈연을 통한 가계계승내지 제사승계를 중시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차자인 유연과 그 자손을 통하여서도 가능한데, 굳이 유유를 핍박한 것은 장자중심의 사고가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유유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자식이 없자 첩자나 계후자를 통해 부의 책망으로 벗어나기보다는 가출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였다. 그리고 가출 때문에 가문에서 그의 지위가 어떻게 될 지, 또 나아가 가문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유의 행동에서는 조상제사의 주재자로서,

37) “游謫龍岡 期滿歸大丘 二年死時 白氏無恙在 游終始不與交私訊”(358면).

가계계승자로서의 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유연은 유유가 가출한 후 부 유예원이 죽자 주저 없이 형을 대신하여 부의 장사를 치렀다. 그리고 형의 생몰에 대해 관심만 가졌지, 형의 제사 등에 대해서는 형을 위하여 입후를 하거나 아니면 형수 백씨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형망제급은 당연하고 또 무후로 사망한 형은 傍親班祔의 禮나 墓直奉祀의 慣行³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다지 장자중심의 사고는 강력하지 않았다.

이지의 처는 부 유예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이 생전인지 사후인지는 불분명하나, 남녀균분상속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사후에 그녀의 봉사를 위해서라면 제사가 가계계승을 상징하기보다는 사후봉양적 의미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지는 처가 받은 재산이 환수당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여기에서 처 사후에 사위의 처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미약해지고,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지의 음모로 처가는 가계단절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는 단행하였고, 일단은 성공하였다. 친손이 모두 죽게 되어 가계는 단절되었지만, 유예원의 사후봉양은 이지 부자가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이점에서 가계의 계승은 당시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추지할 수 있다.

유연의 백숙모인 처모 유씨는 사위 심룡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의 처가 무후로 사망하면 유연 등이 상속하게 한 것에서 혈족상속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심룡은 재산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족을 滅門시키더라도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다.³⁹⁾

백씨는 유유의 가출 때문로부터 자기의 가문 내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즉, 형망제급으로 총부로서의 가문에서의 위상이 격하되고 또 자기에

38) 《經國大典》 <禮典> [奉祀] “旁親之無後者 祔祭 [割註]士大夫無子女 欲以奴婢墓直 主祭者 從財主之意 署文記 使奉其祀 大夫六口 士以下四口”

39)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중 “제2장 土地所有의 法과 法意識”, 특히 229~232면 참조.

게 몰아칠 재산분쟁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형망제급으로 제사에 대한 기대권을 갖고 있는 유연의 존재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눈에 가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지에게 가담하였다. 유예원의 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유유는 가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사를 받들 수 없지만, 자기가 조상을 봉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를 계후자로 선정하여 제사를 지속하면 그만이다. 또 기꺼이 춘수의 아들 정백을 侍養하였다. 그녀는 제사를 가계계승이 아닌 사후봉양으로 여기서 반드시 혈손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香火가 끊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친자의 俱沒로 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유연을 제거하려는 이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柳淵傳>을 통하여 16세기 중엽의 상속관행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상속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 사실 經國大典 禮典 奉祀項目에서는 “兄亡弟及”을, 立後項目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立後奉祀”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습적으로 망자의 처가 봉사하는 “冢婦法”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장자가 무후로 사망한 경우 이 세가지는 서로 모순되어 분쟁을 야기하였다. <柳淵傳>에서는 입후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형망제급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는 총부(白氏)가 형망제급의 수혜지(柳淵)를 포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입후가 널리 보급되지 않고 또 형망제급이 우세한 제사승계의 관행에서 총부가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결국 인간의 역사, 의식의 역사이다. 集團心性史的으로가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기약하며, 그 첫 단추로 감히 이 글을 세상의 빛에 쬐이고자 한다.

The Inheritance and its Conflict appeared in Novel *Youyeon*

Jung Geungsik*

In this paper, I aim to analysis the mentality on the Inheritance of Ancestor-Worship through Novel *Youyeon*(柳淵傳). This Novel was written by *Yi Hangbok*(李恒福, 1556~1618) in 1604, based on *Youyeon*(柳淵)'s murder in 1564. This murder happened because of the *You*'s heritage. *Yiji*(李禔), as *Youyeon*'s sister's husband, intrigued against *Youyeon* for murdering his elder brother *Youyou*(柳游), and *Youyeon* was sent to the scaffold. But in 1580, *Youyeon* was exculpated by *Youyou*'s being, therefor *Yiji* died in criminal procedure.

Youyou disappeared from home because of his father, *Youyewon*(柳暉源)'s blame for being without his son, and after Father's death, *Youyeon* inherited his family. In this fact, we see the customary inheritance that the younger brother was substituted for late elder brother(*HYUNG MANG CHEGEUP*; 兄亡弟及) without the adoption(立後) that receiving a nephew into his family as his own son. And *Youyou*'s wife Mrs. *Baek*(白氏) conspired with *Yiji* because she was afraid of the degradation of status in family without her son. She was the eldest daughter-in-law(*CHONGBU & CHONGBUBUP*; 冢婦[法]) in *You*-Family, in a custom and *CHONGBU*'s status was strong. If *Youyou* had become a inheritor, she would have been deprived of not only a status but also a property. The fact was reflected the *CHONGBU*'s rights was threatened and the custom as *CHONGBUBUP* was weakened by the custom as *HYUNG MANG CHEGEUP*. Even

* Assistant Professor at College of Law in S. N. U.

though *Yiji* was so egoistic to die his wife's family. But his wife's family, the Ancestor-Worships of *Yous`-Family* did not become extinct because he and his son was ready to perform them. This is a custom as the Ancestor-Worships by a daughter's a son(*OESONBONGSA*; 外孫奉祀).

In conclusion in the 16th century, the adoption was not pervaded in the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CHONGBUBUP* was weakened by the custom as *HYUNG - MANG - CHE - GEUP*. This phenomena are reflected by the gaps between legal norms and social customs. And the Man who had lived in the 16th century would not be conscious of the Inheritance of Ancestor-Worship very seriously.